

【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공고 제2026 - 52호】

##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제3항, 고용보험법 제40조, 제61조,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, 제105조에 따라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통지서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6. 6. 16.

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



1. 건 명 :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사전 통지(의견제출 통지)
2. 근 거 :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 및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, 고용보험법 제61조, 제62조, 동법 시행규칙 제104조, 제105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-공시송달 명단 참조
4. 공고기간 : 2026. 6. 16. ~ 2026. 7. 6. (15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(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-16,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5층 부정수급조사팀)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(FAX: 0503-8803-0217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 고용보험수사관 이선영(TEL: 031-920-396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

##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사전통지

〈공고기간 : 2026. 6. 16. ~ 2026. 7. 6.〉

성명	주민등록번호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송달불능사유
이 ○ 하	801006-*****	경기 고양시 일산동구	처분사전 통지서 (의견제출통지)	(처분사유) 귀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근로하였음에도 실업인정일 당시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아 총 52일분의 실업 급여 3,432,0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됨  (처분내용)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,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 ○ <b>총 반환명령액: 7,326,000원</b> ○ <b>지급제한일: 2025.12.30.</b>	폐문부재